

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

「유역조사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, 2012. 08. 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.

2013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유역조사지침」 일부개정(안)

유역조사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1항·제2항, 제13조 1항·2항, 제16조, 제17조1항·2항·3항, 제18조, 제19조1항·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

부칙 (2003. 3. 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